

<교양교육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교양교육학회의 학회지 ‘교양교육연구’의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장 심사

제2조(심사위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이 학회에서 정한 심사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사의 최종 결과를 ‘게재, 수정 게재, 수정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3. 심사위원은 이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지킨다.

제3조(평가항목) 논문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2. 연구 주제의 창의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과정의 타당성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제4조(심사배제) 심사위원 배정시 다음의 경우는 배제한다.

1. 투고자와 같은 기관의 심사위원은 피한다.
2. 당호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이 투고 시에는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판정

제5조(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수정 게재’와 ‘수정 재심’의 경우 수정 요구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수정 게재’ 및 ‘수정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통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의 수정 요구에 대해,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나면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제7조(반려) 반려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반려 혹은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 편집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확인 후 접수한다.

2.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이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관리

제9조(심사 자료)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 관련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3년 간 보관한다.

제5장 부칙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